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43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 : 추경호 · 박수영 · 윤희숙

송언석 · 정희용 · 정점식

김병욱 · 김형동 · 성일종

유경준 · 김도읍 · 박성중

윤재옥 · 김상훈 · 이헌승

최형두 · 김선교 · 권영세

홍준표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 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4(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①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에 1000분의 5를 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

과조치)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고 자 하는 「지방세법」제107조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4(감염병 등에 따른 경
	제위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
	면) 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u>100분의 30을 2021년 12월 31</u>
	일까지 경감한다.
	②「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을 2021년 12월 3
	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u>율에 1000분의 5를 감한 세율</u>
	을 적용한다.